##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00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임종득·성일종·김예지

유용원 • 유영하 • 권성동

박대출 • 인요한 • 김기웅

이상휘 • 박형수 • 김상훈

서범수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임.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또는 내국인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출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및 정착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인구변화 및 지역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출입국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 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에 참조하 도록 하여 장기계획에 대응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민정책 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임(안 제18조 의2 신설 및 제21조제1항 개정). 법률 제 호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의 발급, 출입국 절차, 거주·취업·정착지원 및 준법교육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참조하여야 한 다.
  -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취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무 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 체류지
	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무
	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의 발급, 출입국 절차, 거
	주・취업・정착지원 및 준법교
	육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u>있다.</u>
	② 법무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참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법무부령
	으로 정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_
			다음	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u>
				_
				_
				_
				_
				_

- 1.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현 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하 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인 구감소지역으로 취업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